

#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6 - 14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2006년 4월 12 일

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 관련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 시행됨으로써,
-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「거창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」의 개정안을 제안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 를  
⇒ “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 로  
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함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  
⇒ 지방자치법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개정함(안 제1조)  
⇒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으로 개정함(안 제5조)
-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함(안 제2조 제1항 2호, 제4조 제1항 1호, 2호)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(의정활동비)
- 지방자치법 제15조의 3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)

##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 “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 2”를 “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 15조의 3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1호 및 2호 “회의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“공무원연금법시행령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<b>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</b></p> <p><b>제1조(정의)</b>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)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“회기수당”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.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 <p><b>제4조(보상금지급기준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li> </ol> | <p><b>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</b></p> <p><b>제1조(정의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<br/>-----제15조의 3의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“의정활동비”라 함은 -----<br/>-----의정활동비-----.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<b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-----<br/>-----<br/>-----의정활동비의-----<br/>-----</li> </ol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3. (생략)<br/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2. -----<br/>-----의정활동비<br/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br/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<br/>-----「공무원<br/>연금법 시행령」 -----<br/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